

##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3일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

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일자 : 2020년 4월 3일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학교 현황

연번	구분	학 교 명	위 치	보호구역 면적(m <sup>2</sup> )		비고 (고시사유)
				절대	상대	
1	변경	지축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50 (지축동 546번지 일원)	15,781	203,245	신규 출입문 설정
2	변경	지축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50 (지축동 546번지 일원)	15,781	203,245	신규 출입문 설정

### 3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

- 가. 절대보호구역 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
- 나. 상대보호구역 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※ 다만,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가 없는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절대보호구역을 설정

### 4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

## 5.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

-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문의 (☎ 031-900-2911)

## 6. 참고사항

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, 지번누락,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